

 보건복지부		보 도 참 고 자 료	
배 포 일	2022.5.29 / (총 4매)	담당부서	장애인서비스과
과 장	백 경 순	전 화	044-202-3340
담당자	김 성 겹		044-202-3344

내년부터 장기요양 서비스를 이용하는 노인성 질환 65세 미만 장애인도 활동지원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 규정 등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본회의 통과(5.29) -

□ 보건복지부는 장애인활동지원급여의 신청자격을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를 개정하여 내년부터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이 있는 장애인도 활동지원 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 개정 전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는 노인장기요양 보험법에 따른 노인 등*을 활동지원급여 신청자 격에서 배제하였으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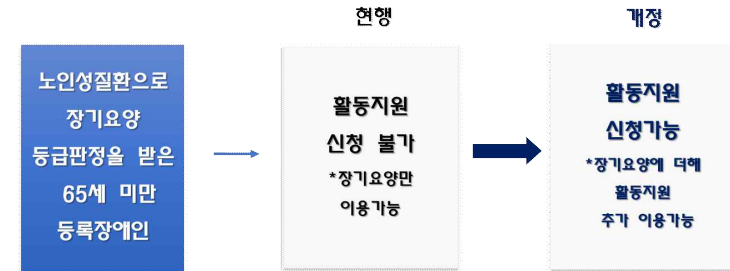
* ①65세 이상의 노인 및 ②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 질환자

○ 헌법재판소는 65세 미만의 장애인 가운데 치매·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 질환이 있는 사람에 대해 일률적으로 활동지원 신청자격을 제외하는 것은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결정*하였다.

* '22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법을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헌법불합치, '20.12월)

○ 보건복지부는 이번 법 개정을 통해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자의 활동급여 신청을 허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제도 개선 전후>



□ 내년부터 노인성 질환으로 인해 장기요양보험을 이용하는 65세 미만의 등록장애인도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게 되어 장애인 활동지원 대상자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으로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는 장애인이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서비스지원종합조사 결과 활동지원 급여 필요성이 인정되면, 장기요양급여에 더해 활동지원급여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 2021년 기준 65세 미만 노인성질환자인 등록장애인은 25,368명이며, 이 중 약 2,700여 명이 장기요양에 더해 활동지원급여를 추가로 이용할 것으로 추정*된다.

* 건강보험공단 데이터와 사회보장정보원 데이터 등을 활용하여 등록장애인 모의적용 및 전화조사를 실시하고, 미등록 장애인의 장애등록 가능 여부 등을 고려하여 추정

○ 이는 활동지원수급자가 65세 이후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로 전환된 경우에도 장기요양급여에 더해 활동지원급여를 지원하는 것과 동일한 방식이다.

* (참고 보도자료) 65세 이후에도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20.12.22)

- 보건복지부는 연내에 관련 전산시스템 및 지침 등을 정비하고, 내년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예산을 추가 확보하여, 해당 제도개선이 현장에서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이다.
- 염민섭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은 장애인으로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노인성 질환을 겪어 노인에 해당하는 분들에 대해 보다 촘촘한 장애인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 노인성질환으로 장기요양을 이용하고 계시는 약 2,700분들의 장애인분들이 추가로 활동지원급여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설명했다.

<붙임>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개요

<별첨>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붙임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개요

- (근거)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2011년부터 시행
- (목적) 일상생활·사회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해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돌봄부담을 경감
- (지원대상) 6~65세 미만 등록 장애인 중 신체기능과 자립생활 능력 등을 평가한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 활동지원등급 판정을 받은 자
- (지원규모) 활동지원급여(활동지원등급별 산정) + 특별지원급여(생활환경 고려)
 - * 최소 약 60시간(889,000원) ~ 최대 약 480시간(7,105,000원)
 - * 활동지원등급 : 기능상태, 사회활동, 가구환경 등서비스 필요도를 평가한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에 따라 산출된 종합점수에 따라 1~15구간으로 구분

구분		급여량				
활동 지원 급여	급여	1구간	2구간	3구간	4구간	5구간
		7,105,000원 (약 480시간)	6,660,000원 (약 450시간)	6,217,000원 (약 420시간)	5,773,000원 (약 390시간)	5,329,000원 (약 360시간)
		6구간	7구간	8구간	9구간	10구간
		4,885,000원 (약 330시간)	4,440,000원 (약 300시간)	3,997,000원 (약 270시간)	3,553,000원 (약 240시간)	3,109,000원 (약 210시간)
		11구간	12구간	13구간	14구간	15구간
		2,665,000원 (약 180시간)	2,220,000원 (약 150시간)	1,777,000원 (약 120시간)	1,333,000원 (약 90시간)	889,000원 (약 60시간)
특별 지원 급여	본인 부담	- 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 : 면제 - 차상위계층(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 제외) : 2만 원(정액) - 차상위 초과 : 소득에 따라 차등 부담(35.5천원 ~ 177.6천원)				
	급여	출산, 자립준비, 보호자 일시부재 297,000원~1,185,000원(약 20~80시간)				
특별 지원 급여	본인 부담	면제				

- (급여종류) 활동보조(신체·가사활동·이동지원 등), 방문간호, 방문목욕
 - (활동지원기관) 지자체의 장이 기관의 지역적 분포, 수급자 수, 적정 공급규모 등을 고려하여 서비스 종류별로 지정
 - (활동지원인력) 활동보조는 교육(50시간) 이수한 활동지원사에 의해 제공되며, 방문간호는 간호사 등이, 방문목욕은 요양보호사가 제공
- (시간당 단가) 활동보조 14,800원/시간('22년 기준)
 - 예산 : ('21) 15,070억 원(99,000명) → ('22) 17,405억 원(107,000명, +8,000명 증)